



국민체육진흥법

[시행 2022. 2. 11.] [법률 제18380호, 2021. 8. 10., 타법개정]

문화체육관광부 (체육정책과) 044-203-3119

제18조의11(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의 실시)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계의 성폭력 등 폭력 방지를 위하여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의 내용 및 방법, 대상, 기간 등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.

[본조신설 2020. 2. 4.]

[제18조의6에서 이동 <2020. 8. 18.>]